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5(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지역조합의 범위)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”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.

제19조의8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탁금등(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)의 경우에는 각각 그 밖의 예탁금등과 별도로 보장한도를 적용한다

제19조의8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(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 본문에 따른 연금저축을 포함한다)에 대한 예탁금 등
2.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(제1호의 예탁금 등은 제외한다) 중 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금(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)

제19조의11제1항 본문 중 “예탁금등(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예탁금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제19조의11(출연금 등) ①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등 (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(이하 이 조에서 “요율”이라 한다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

• (생략)

부칙 제41조 본문에 따른 연금지축을 포함한다)에 대한 예탁금 등

2.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(제1호의 예탁금 등은 제외한다) 중 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금(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)

제19조의11(출연금 등) ① -----

----- 예탁금 등 -----

-----.

•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